
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기준일: 2021. 5. 20

1.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(기준일 현재 해당사항 없음)
 - 부동산(지상권 · 지역권 · 전세권 · 임차권 ·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 -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2.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분의 설정 및 각 부문별 대상 정보
 - 집합투자업무와 고유자산운용업무로 구분 설정
 - 부문별 자산운용내역 및 미공개중요정보
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 - 미공개중요정보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지정하고 회사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제한(기준일 현재 해당 사항 없음)
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 -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되어있는 상장(예정포함) 주식에 대한 임직원 및 고유재산의 선행 매매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및 검토 절차를 시행 중
5. 상시적 정보교류차단
 - 집합투자업무와 고유자산운용업무간에 사무공간분리 및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을 적용하여 정보차단벽 설치
6. 예외적 교류의 방법
 -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를 제외하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교류차단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승인을 받아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수하여 교류